

● 제284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1. 2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39, 240

I. 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18. 10. 31.
- 다. 회부일 : 2018. 11. 5.

2.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세입예산

-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최종 예산대비 16.1% 증액된 1조 3,576억 9,22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9년도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안)	2018대비 증감	증감율 (%)
일반회계	1,169,173,389	1,357,692,202	188,518,813	16.1
200 세외수입	25,654,419	57,184,887	31,530,468	122.9
210 경상적세외수입	133,530	606,365	472,835	354.1
220 임시적세외수입	25,520,889	56,578,522	31,057,633	121.7
500 보조금	772,372,252	951,966,827	179,594,575	23.3
510 국고보조금등	772,372,252	951,966,827	179,594,575	23.3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0,746,718	348,540,488	△22,206,230	△6.0
710 보전수입등	2,963,538	3,711,908	748,370	25.3

예산과목 (장/관/항/목)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안)	2018대비 증감	증감율 (%)
720 내부거래	367,783,180	344,828,580	△22,954,600	△6.2

나. 세출예산

-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최종 예산대비 9.8% 증액된 2조 6,597억 4,5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9년도 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예산(안)	2018년대비 증감	증감율 (%)
일반회계	2,423,082	2,659,745	236,663	9.8
사업비	2,413,634	2,656,471	242,837	10.1
행정운영경비	705	741	36	5.1
재무활동비	8,743	2,533	△6,210	△71.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II.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안일 : 2018. 10. 31.
- 다. 회부일 : 2018. 11. 5.

2. 기금운영계획안의 규모 및 특징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평등기금의 2019년도말 총 조성액은 240억 91만 원으로 사업비 및 제반비용으로 9억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임.

<2019년도 기금조성계획>

(단위 : 천원)

2018년말 조성액 ㉑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말 조성액 ㉒=㉑+㉓
	수입 ㉑	지출 ㉒	증감 ㉓=㉑-㉒	
24,021,520	937,611	950,000	△12,389	24,009,131

*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지출액은 융자성·비용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세입 예산안 검토

가. 2019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개요

- 2019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577억 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24조 1,849억 원의 5.6%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이는 2018년 예산 대비 1,885억 원이 증액(16.1%)된 것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8년 예산 (최종예산) ①	2019년 예산(안) ②	증감 ② - ①	증감율
1,169,173	1,357,692	188,519	16.1

나. 2019년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최근 5년간 변동추이

-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예산의 세입구조는 주로 '국고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의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9,093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3,448억 원으로 전체의 25.4%로 나타남.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	2018년 대비 증감액	증감율 (%)
계	1,010,185	1,062,799	1,047,150	1,169,173	1,357,692	188,519	16.12
	(100%)	(100%)	(100%)	(100%)	(100%)		
세외수입 (전체대비 구성비율)	6,065	22,322	19,937	25,654	57,185	31,530	122.9
	(0.6%)	(2.1%)	(1.9%)	(2.2%)	(4.2%)		
경상적세외 수입 (전체대비 구성비율)	383	557	123	134	606	473	354.1
	(0.0%)	(0.1%)	(0.0%)	(0.0%)	(0.0%)		
공유재산 임대료	383	557	123	134	143	10	7.3
이자수입					463	463	-
임시적 세외수입 (전체대비 구성비율)	5,682	21,765	19,815	25,521	56,579	31,058	121.7
	(0.6%)	(2.0%)	(1.9%)	(2.2%)	(4.2%)		
시도비 반환금 수입	4,709	19,661	17,252	16,174	44,812	28,638	177.1
그외수입	973	2,103	2,562	2,649	2,628	△21	△0.8
지난연도 수입				6,698	9,139	2,440	36.4
보조금 (전체대비 구성비율)	636,670	657,419	669,132	772,372	951,967	179,595	23.3
	(63.0%)	(61.9%)	(63.9%)	(66.1%)	(70.1%)		
국고보조금	624,212	633,548	636,687	740,527	909,283	168,756	22.8
	(61.8%)	59.6%)	60.8%)	(63.3%)	(67.0%)		
기금	12,458	23,871	32,445	31,845	42,683	10,838	34.0
보전수입 등 내 부거래 (전체대비 구성비율)	367,450	383,058	358,081	370,747	348,540	△22,206	△6.0
	(36.4%)	(36.0%)	(34.2%)	(31.7%)	(25.7%)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25	1,733	1,956	2,964	3,712	748	25.3
교육비특별 회계잔입금	366,225	381,324	356,125	367,783	344,829	△22,955	△6.2
	(36.3%)	(35.9%)	(34.0%)	(31.5%)	(25.4%)		

-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의 최근 5년간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의 절대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18년 9월 아동수당 지급 첫해인 '18년도에는 7,405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038억 원이 증가하였고, '19년도에는 1,688억 원이 늘어난 9,093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상대적 비율은 '15년 61.8%에서 큰 차이가 없다가, '19년에 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가. 201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개요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2조 6,597억 원으로, 2018년 최종예산 2조 4,231억 원 대비 9.8% 증액된 수준임.

<2019년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8년 예산 (최종예산) ①	2019년 예산(안) ②	증감 ② - ①	증감율
(x 772,372) 2,423,082	(x 951,967) 2,659,745	(x 179,595) 236,663	9.8

나. 최근 5년간 세출예산 변동추이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35조 7,843억 원)의 7.4%에 해당하며, 이는 '18년의 세출예산 구성비에서 0.6% 증가한 수준임.

<최근 5년간 서울시 총예산 및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시 총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예산총액	서울시 총예산대비율(%)	전년대비증감율(%)
2015	26,513,778	2,099,712	7.9%	0.83%
2016	27,503,758	2,181,526	7.9%	0.30%
2017	29,652,475	2,176,902	7.3%	-0.02%
2018	35,608,127	2,423,082	6.8%	-0.07%
2019	35,784,344	2,659,745	7.4%	0.75%

* 사업비 및 부서운영비를 포함한 전체예산, 전년도 최종예산액 기준

* 서울시 총예산은 각 연도별 예산서(안)에 나온 전년도 최종예산 자료를 사용함

- 최근 5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예산 총액 기준으로 볼 때, `15년 2조 997억 원이었던 것이 `19년에는 2조 6,597억 원으로 증가하여, 4년 사이에 5,600억 원이 늘어난 것임.
- 이는 `15년 대비 78.9% 증가한 것으로, 동 기간 동안 서울시 총예산 규모가 74.1% 증가한 것에 비하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규모가 서울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7.9%였던 것이 `18년에 6.8%로 줄어들었다가 `19년 예산안에는 7.4%로 늘어났음.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
총계	2,099,712 (100%)	2,219,517 (100%)	2,237,431 (100%)	2,423,082 (100%)	2,659,745 (100%)	236,663	9.8
사업비	2,097,014 (99.87%)	2,213,184 (99.71%)	2,233,251 (99.81%)	2,413,634 (99.61%)	2,656,471 (99.88%)	242,837	10.1
행정 운영경비	609 (0.03%)	621 (0.03%)	631 (0.03%)	705 (0.03%)	741 (0.03%)	36	5.1
재무활동	2,089 (0.10%)	5,712 (0.26%)	3,549 (0.16%)	8,743 (0.36%)	2,533 (0.10%)	-6,210	-71.0

* ()안은 총계 대비율을 말함

- 여성가족정책실 세출구조는 연례적으로 99% 이상이 사업비 예산으로 구성됨.

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증감사유

- 최근 5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은 2013년에 무상보육을 도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매해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늘어나면서, 금번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9.8%가 증가하였음.
- `18년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의 전면시행 등에 따라 2019년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의 편성 방향

- 서울시에서 제시한 여성가족정책실 2019년도 예산편성방향은, ‘①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정착 및 성평등 인식 확산’, ‘②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 ‘③ 촘촘한 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 자녀 양육부담 경감’, ‘④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안정적 정착 지원’이라는 크게 4개 분야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음.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편성 방향 >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정착 및 성평등 인식 확산

- 초·중·고등학교 성평등 교육 : 25개교 15천명('18) → 30개교 18천명('19년)
- '서울#with U' 프로젝트 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성평등 노동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성별임금격차 해소 추진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제고

- '안심이'앱 전 자치구 확산 : 4개구('18년) → 25개구('19년)
- 가용자원 총동원, 화장실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45천개 창출

촘촘한 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 자녀 양육부담 경감

- 국공립 이용률 40% 달성,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100% 지원
- 1동 1열린육아방 및 키움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5,600명 운영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안정적 정착 지원

- 외국인 및 이주여성 상담 17만건, 이주여성 긴급보호 85명
-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 및 위기 다문화 가족 안전망 구축

마.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 2019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보육 담당관 소관 예산이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예산의 68.9%(1조 8,313억 6천 6백만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가족담당관 22.6%(6,000억 7천 4백만 원), 여성정책담당관 4.03%(1,073억 7백만 원), '18년 11월에 신설된 아이돌봄담당관 3.6%(966억 4천만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9%(236억 2백 만 원), 아동복지센터 0.03%(7억 5천 6백만 원) 순으로 나타남.

<여성가족정책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안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
총계	2,099,712 (100%)	2,219,517 (100%)	2,237,431 (100%)	2,423,082 (100%)	2,659,745 (100%)	236,663	9.8
여성 정책 담당관	84,715 (4.03%)	97,011 (4.37%)	79,844 (3.57%)	96,749 (3.99%)	107,307 (4.03%)	10,558	10.9
보육 담당관	1,774,044 (84.49%)	1,892,006 (85.24%)	1,908,290 (85.29%)	1,899,760 (78.40%)	1,831,366 (68.85%)	△68,394	△3.6
가족 담당관	217,783 (10.37%)	209,152 (9.42%)	226,414 (10.12%)	335,367 (13.84%)	600,074 (22.56%)	264,707	78.9
아이돌봄 담당관				65,418 (2.70%)	96,640 (3.63%)	31,222	47.7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22,381 (1.07%)	20,538 (0.93%)	22,104 (0.99%)	25,027 (1.03%)	23,602 (0.89%)	△1,425	△5.7
아동복지센터	873 (0.04%)	789 (0.04%)	810 (0.03%)	779 (0.03%)	760 (0.03%)	756	△0.5

* ()안은 총계 대비율을 말함(0.04%)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은 보육담당관과 가족담당관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사업과 아동 및 가족사업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의 사업과 예산이 운용됨을 보여줌.

바. 국고보조 사업과 순수 시비사업 예산사업 비교

- 2019년도 기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중,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순수 시비 사업비간의 예산 비율은 75.6 : 24.4로 나타남.
 - 다시 말해, 여성가족정책실 사업 예산의 3/4 가량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법정 의무 준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순수 서울시에서 가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약 24% 수준으로 볼 수 있음.

<국고보조금 사업 및 순수 시비 사업의 예산 및 사업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업					
부서	예산			사업수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액	2018년	2019년
여성정책담당관	42,940	46,407	3,468	33	28
보육담당관	1,452,855	1,400,419	△52,436	13	13
가족담당관	194,900	463,802	268,902	19	23
아이돌봄담당관	58,286	86,882	28,596	10	10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11,917	12,238	321	2	2
아동복지센터	55	55	0	1	1
소계	1,760,954 (72.7%)	2,009,804 (75.6%)	248,850	78	77

순수 시비 사업					
사업명	예산			사업수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액	2018년	2019년
여성정책 담당관	53,810	60,900	7,090	33	34
보육담당관	446,037	430,947	△15,090	14	12
가족담당관	141,336	136,272	△5,064	20	20
아이돌봄 담당관	7,132	9,758	2,627	4	5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13,110	11,364	△1,746	26	15
아동복지센터	704	701	△4	2	2
소계	662,128 (27.3%)	649,941 (24.4%)	△12,187	99	88
총계	2,423,082 (100.0%)	2,659,745 (100.0%)	236,663	177	165

*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비, 정책사업비를 모두 포함하여 총계와 일치하게 작성

* ()안은 총계 대비율을 말함

- 한편, 국비보조금 사업과 순수시비 사업을 사업수로 구분해보면, `19년 기준 총 165개 가운데 국비 매칭사업은 총 77개이고, 순수 시비사업은 88개로 나타났음.
- 이는 전년과 비교해볼 때, 국비보조 사업수는 1개, 순수시비 사업 11개가 줄어, 전체 사업 수로는 12개가 줄어든 것임.

사. 100억원 이상 주요 사업

- 2019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가운데 100억 이상 규모를 가진 사업은 총 17개임.
 - 가장 큰 예산규모를 가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총 예산의 24.5%에 해당함. 다음으로는 ‘아동수당 지원’ 사업이 14.6%,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이 10.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 9.4%,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이 8.0%,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업이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기 6건의 사업은 여성가족정책실 총 예산 대비 72.2%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보육 관련 예산이며, 작년 9월부터 최초 지급된 ‘아동수당 지원’은 `19년의 경우 1년치 금액을 편성하여 예산액이 크게 증액되었음.

<100억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번	부서	사업명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증감액	실 예산 대비율
1	보육담당관	영유아 보육료 지원	624,987	651,509	26,522	24.5
2	가족담당관	아동수당 지원	143,011	388,585	245,574	14.6
3	보육담당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78,541	265,671	△12,870	10.0
4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22,821	250,512	27,691	9.4

5	보육담당관	가정양육수당지원	270,097	211,769	△58,328	8.0
6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55,017	151,378	△3,639	5.7 (누계: 72.2%)
7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38,375	135,726	△2,649	5.1
8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76,642	77,094	452	2.9
9	보육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7,750	74,320	△63,430	2.8
10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45,095	63,347	18,252	2.4
11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9,362	37,674	18,312	1.4
12	아이돌봄담당관	아이돌봄 지원	22,612	32,573	9,961	1.2
13	아이돌봄담당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보조)	27,318	28,305	987	1.1
14	가족담당관	아동급식지원	21,803	20,800	△1,003	0.8
15	여성정책담당관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11,098	17,232	6,134	0.6
16	여성정책담당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3,682	12,865	△816	0.5
17	아이돌봄담당관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83	13,711	13,628	0.5 (누계: 91.5%)

아. 신규사업 (주민참여예산 제외)

1) 2019년 신규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한 2019년 신규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89억 9,517만 원임.
- 신규사업별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음.

<신규사업 내역>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내용
합계			8,995,171	
1	여성정책담당관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295,000	○ 사업내용 -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신설운영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운영 - 성평등 고용 및 실천 컨설팅 등 ※ 전액 시비사업
2	여성정책담당관	서울#WithU센터 설치, 운영	220,000	○ 사업내용 - 서울#WithU센터 설치 준비위원회 운영 - 서울#WithU프로젝트 소규모사업장 성희롱예방교육 운영 - 서울#WithU캠페인 홍보 등 ○ 추진방법: 직접수행 ※ 전액 시비사업
3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양성	300,000	○ 사업내용 - 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자로서 교육활동가 양성 - 일상의 성차별에 참목하지 않는 성평등 학생활동가 양성 - 정책현장에서 성차별 사례를 개선하는 정책활동가 양성 등 ※ 전액 시비사업
4	여성정책담당관	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 개발	52,000	○ 배경: 경제력이 없어 가해자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할 수 밖에 없는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 시스템 개발 시급(민선7기 공약사업) ○ 내용: 시스템(모델)개발을 위한 전문연구 용역 ○ 방법: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 선정 ※ 전액 시비사업

연도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내용
5	여성정책 담당관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	519,460	○ 청소년, 여성 및 취약계층 이용 공공기관 200여개소에 비상용 무료생리대사업 실시 - 청소년수련관, 여성발전센터, 복지관 등 ※ 전액 시비사업
6	보육담당관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운영	387,000	○ 사업내용 - 생태친화 보육 매뉴얼 제작, -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 25명 배치 ※ 전액 시비사업
7	가족담당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268,140	○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 치료 지원
8	가족담당관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219,096	○ 사업목적: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지원 ○사업내용 - 대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경계선지능아동 중 선별체크리스트,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선발된 아동 - 지원내용: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인지, 사회성, 자립영역) 제공 - 추진방법: 시설 종사자를 경계선지능 아동지도사로 양성하여 사례 관리 지원
9	가족담당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15,236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의 보호종료아동 ○ 추진방법: 보호종료아동 선발후 아동자립지원단을 통한 사례관리 등 지원 ○ 사업내용: 주거지원(임대주택, 도배등 주거여건 지원) 및 사례관리 지원
10	가족담당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275,957	○사업목적: 보호종료된 보호대상아동 중 자립수당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9.4월~12월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2년 이내 18세 ~ 24세 아동 - 지원금액: 30만원/월별지급
11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980,000	○ 사업목적: 학업, 취업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을 겪는 시설입소 한부모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 사업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를 통해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하여 기관파견 돌보미서비스 제공

연도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신청 사유 : 한부모의 교육·훈련·취업 활동으로 인한 양육 공백, 시설 프로그램 참여, 일시적 아동돌봄 보조(식사보조, 등하원 보조) 등 ○ 사업 필요성(증감사유 및 특이사항) - 시설 입소 한부모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 재원분담 : 국비 30%, 시비 70%
12	아이돌봄 담당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2,310,000	○ 미 실시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노후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 지원(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 조성
13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	53,2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간의 우대감과 의사소통능력을 확보하여 자존감 형성을 통해 사회적 부적응 극복 및 가족친화력 함양 필요 - 미래 한국사회의 기여 요소로써 다문화 가정 자녀 언어 능력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19. 3~9월(6개월 총 24회/ 회당 3시간) - 대상: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3~6학년 총 90명(권역별 45명) - 추진방법: 공모를 통해 전문기관 선정하여 사업운영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교육: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3개반으로 편성운영 · 문화 교육: 주제별 양국 문화 비교 교육 및 체험 <p>※ 전액 시비사업</p>

*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외

자. 주민참여예산

1) 주민참여예산 현황

- 2019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총 730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총 647억 1,72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9개 사업에서 총 32억 5,560만 원이 편성됨.

<2019년도 시민참여예산 유형별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계 (%)	시정참여형 (시민참여예산과)	시정협치형 (민관협력담당관)	지역참여형 (시민참여예산과)	구단위 계획형 (지역공동체담당관)	동단위 계획형 (지역공동체담당관)
사업수	전체	730	67	35	91 (14개 자치구)	176건 (11개 자치구)	361건 (25개 자치구)
	여성 가족정책 실	9 (1.2%)	2 (3.0%)	4 (11.4%)	3 (2개 자치구) (3.3%)	-	-
예산	전체	64,717,203	35,025,790	9,527,628	6,675,785	11,100,000	2,388,000
	여성 가족정책 실	3,255,597 (2.6%)	2,198,000 (6.3%)	935,762 (9.8%)	121,835 (1.8%)	-	-

- 주민참여예산은 `18년에 “시민참여예산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17년에 100억 원을 편성했던 협치서울 의제사업이 시민참여예산제로 흡수되는 등으로 700억 원 규모로 확대·개편하여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시정

협치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 여성가족정책실의 시민참여예산은 각각 시정참여형이 2건, 21억 9,800만 원, 시정협치형이 4건, 9억 3,576만 원, 지역참여형이 3건, 1억 2,184만 원으로 편성되었음.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개요	비고
총계			3,255,597		
1	여성정책 담당관	치매예방전문지도사 양성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시민참여)	53,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2019. 1 ~ 12월 - 지원대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력 단절여성 - 사업수행주체: 강남구 - 추진방법: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수행 - 주요내용: 집단상담, 현장실습, 심화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치매예방전문 지도사로서의 취업지원 	지역참여형 (강남구)
2		발로 뛰는 현장활동으로 서울을 바꾸다 -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시민참여)	3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배경: 시민제안 협치사업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및 자치구 풀뿌리여성 네트워크 활성화 - 성평등정책활동가 및 성인지성 강화 현장활동 추진 - 젠더거버넌스 한마당 개최 	시정협치형
3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 희망밥상 나눔프로그램(시민참여)	97,7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한부모가족의 지역사회 공동체 내 주도성 확보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사업내용: 한부모가족 반찬, 밥상 나눔교육, 희망찬 반찬나눔, 반찬밥상 나눔 프로그램 평가회 ○ 사업 필요성(증감사유 및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간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 한부모가족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상 실감 회복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자원분담: 시비 100% 	시정협치형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개요	비고
4		살리GO살리GO프로젝트_한부모 가정의 학업지원(시민참여)	9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가족의 가구원이 건강한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내용: 교과목수업을 통해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가족에게 검정고시 응시 기회를 제공 ○ 사업필요성(증감사유 및 특이사항)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학교 밖 학습지원으로 자립역량 강화 도모 ○ 재원분담: 시비100% 	시정참여형
5		희망과 사랑의 밑반찬 지원(시민참여)	2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한부모가족의 희망밥상 나눔을 통해 한부모가족간 자립역량강화 및 사회적관계망 형성 ○ 사업내용: 한부모가족 반찬, 밥상 나눔교육, 희망찬 반찬나눔, 반찬밥상 나눔 프로그램 평가회 ○ 사업 필요성 - 한부모가족간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 한부모가족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상실감 회복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재원분담: 시비 100% 	지역참여형 (노원구)
6		미세먼지 NO!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시민참여)	2,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친화적이고 참여적인 여가문화 조성, 놀이의 공공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확보 	시정참여형
7	아이돌봄 담당관	동주민센터 내 아동돌봄센터 설치 운영(시민참여)	3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 사업내용: 동주민센터 내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3개소 지원(리모델링비, 집기구입비) 	시정협치형
8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주민주도형 대안공간 '마더센터'(시민참여)	23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보육공간 확대를 통해 독박육아 여성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사업내용: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및 엄마들을 위한 맘카페 운영 	시정협치형
9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결혼이주여성 법률, 인권강의 및 직업체험(시민참여)	42,6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지역참여형-자치구 수행)으로 선정되어 편성 통보됨 	지역참여형 (강남구)

2)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편성 추이

<연도별 주민참여 예산 편성 및 운영 추이>

(단위: 개, 천원)

부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여성 정책 담당관	4	340,000	2	70,000	4	517,000	5	921,600	4	745,000	2	353,145
보육 담당관	3	760,000	10	1,335,000	5	296,000	3	120,000	3	1,068,800		
가족 담당관	2	80,000	5	316,000	3	26,000	3	57,000	3	514,500	4	2,321,762
아이 돌봄 담당관											2	538,000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4	470,000	7	214,000	1	15,000	18	929,600	6	299,380	1	42,690
합계	13	1,650,000	24	1,955,000	13	854,000	29	2,028,200	16	2,627,680	9	3,255,597

- 주민참여예산은 '13년도를 시작으로 예산에 반영되기 시작하여 서울시 전체로는 매년 500억 원 규모로 시행해오다가, '18년도부터 700억 원대로 확대·개편되어, 금번 '19년 예산으로 7년차를 맞이하고 있음. 시행 첫해의 총 사업 수는 7개였고, '15년에는 24개로 크게 늘었으며, '17년에는 최대인 19개 사업(20억 2,82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금번 '19년 예산안에는 9개로 전년에 비해 7개 사업(△6억 2,792만 원)이 줄어들었음.
- 반면에,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13년 12억 8,800만 원으로 시작하여, '14년부터 '16년까지는 16억 5,000만 원, 19억 3,500만 원, 8억

5,400만 원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17년에 20억 2,820만 원이 편성된 이후부터 계속 늘어나서 이번 `19년 예산안에는 32억 5,560만 원으로 최대치를 갱신하였는데, 이는 여성가족정책실과 관련한 다양한 예산 규모의 사업들이 시민에 의해 제안되어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함.

- 부서별 현황으로 볼 때는, 보육담당관 소관의 주민참여예산이 `15년까지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16년과 `17년에는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년도 예산안에는 가족담당관에 71.3%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음.

3)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의 전반적 특징 및 검토의견

-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① 아동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실내놀이터나 아동돌봄센터, 마더센터와 같은 돌봄공간 마련 ② 성평등 활동 지원 ③ 그 외 한부모가족 자립 및 교육 지원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음.
- 금번 2019년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시행 7년차를 맞고 있는데,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지적을 한 바 있음.
- 동일사업의 중복성 문제나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로 예산신청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의 형식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금번 예산에도 동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19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9건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이 '적정'이나 '조건부 적격'이었으나, '동주민센터 내 아동돌봄센터 설치 운영' 사업의 경우, `19년 예산안에 포함된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주민참여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임.

차. 세부 사업별 검토 의견

1) 서울 #WithU 센터 설치, 운영 (신규)

- 서울 #WithU 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이며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19년 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한 순수 시비 사업임.

<‘서울 #WithU 센터 설치, 운영’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220,000	(x-) 220,000	(x-) 0
사무관리비	(x-) 0	(x-) 0	(x-) 220,000	(x-) 220,000	(x-) 0

- 해당 예산의 주요 내용은 ① 서울 위드유 센터 설치 준비위원회 운영비(2,000만 원)와 ② 서울 위드유 프로젝트 예방교육 운영비 (5,000만원), ③ 서울 위드유 프로젝트 홍보비(1억 5,000만 원)로 사무관리비로만 편성되었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서울 #WithU 센터 설치, 운영’ 예산 산출근거>

과목구분	예산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서울 위드유 센터 설치 준비위원회 운영 20,000,000 = 20,000천원 준비위원회 회의수당 15만원*10명*10회 = 15,000,000원 원고료, 속기록, 회의준비비 5,000,000원
	○ 서울 위드유 프로젝트 예방교육 운영 50,000,000 = 50,000천원 강사수당 23만원*180회=41,400,000원 교육자료 브로셔 제작비 8,600,000원
	○ 서울 위드유 프로젝트 홍보 150,000,000 = 150,000천원

- 그런데 사업명이 ‘서울 #WithU 센터 설치, 운영’인 것과 달리 세부 사업내용은 센터 설치 전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과 사업 홍보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내용이 사업목적과 직접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민선 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성평등 분야)에 따르면 센터의 설치 시기를 `19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어, 해당 기간 만큼의 설치·운영비용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실제 센터 설치·운영 관련 예산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서울 #WithU 센터 설치, 운영’ 계획 >

「서울#WithU」 센터 운영(`19년)

- 설치개요

- 조직 및 인력 : 3팀 13명
 - ▶ 소장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팀, 피해자 지원팀, 성평등문화조성팀 각 4명
- 설치방안 : '19년 하반기 센터 임차 추진 → '20년 하반기 서울여성플라자 입주
- 임차장소 : 소규모 영세사업장 밀집지역 선정
 - ※ 서울시 사업체 중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장 수('16년) : 강남(6만1천), 중구(5만9천)
- 운영방식 : 직영 또는 민간위탁
- 소요예산 : 12억원(인건비 4억, 관리비 4억, 사업비 4억)

* 출처 : 서울시, 민선 7기 지정운영 4개년 계획(성평등 분야)

- 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18년에만 이미 4번의 자문회의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9년 본 예산안에서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집행부 스스로도 센터 설치에 대한 의지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동 사업은 “서울#WithU 프로젝트 운영”이라는 거의 동일한 사업명으로 '18년 하반기에 기추진된 바 있으며, 해당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을 사유로 성평등기금을 변경하여 1억 원의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8년 서울#WithU 프로젝트 운영(안)>

사업명	수행기관	추진기간	소요예산
소규모 영세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나무여성인권상담소	2018. 7.~ 12.	50,000천원
성희롱 피해자 법적 지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2018. 7.~ 12.	20,000천원
서울 #WithU 캠페인 운영	인디엔피	2018. 7.~ 12.	30,000천원

- 즉, 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기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문회의도 수차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동 사업은 사업명부터 세부계획까지 전반적인 사업 점검과 수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에 편성된 세부예산 가운데, 동 사업의 홍보를 위한 예산이 전체 예산에 68%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이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앞에서 기술한 바 대로, 동 사업의 예산내역이 사업목적이나 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의 2/3 이상이 홍보비로 편성한 것은 결국 직접 사업보다는 대시민 언론 홍보 등에만 주력하는 속빈 강정이 될 소지가 높음.
 - 보육담당관 소관의 핵심 시비사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홍보비(보육프로그램 유지비 포함) 내역도 최근 5년간 평균 2억 2,220만 원을 편성했던 점을 비교·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내 홍보비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통계목	내역	예산액
2015년	사무관리비	홍보비	100,000
2016년	사무관리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홍보 및 보육프로그램 유지	360,000

2017년	사무관리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홍보 및 보육프로그램 유지	400,000
2018년	사무관리비	국공립어린이집 홍보	100,000
2019년	사무관리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홍보	150,000
평균	-	-	222,000

2)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계속)

- 동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한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의 경제 사회적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임.
- '19년 예산은 전년대비 36억 3,908만 원이 감액(2%증가)된 1,513억 7,801만 원이 편성됨.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업 예산 명세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55,017,146	(x-) 155,017,146	(x-) 151,378,069	(x-) Δ3,639,077	(x-) Δ2
사무관리비	(x-) 31,100	(x-) 31,100	(x-) 31,100	(x-) 0	(x-) 0
공공운영비	(x-) 23,000	(x-) 23,000	(x-) 0	(x-) Δ23,000	(x-) Δ1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x-) 13,000	(x-) 13,000	(x-) 13,000	(x-) 0	(x-)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154,950,046	(x-) 154,950,046	(x-) 151,333,969	(x-) Δ3,616,077	(x-) Δ2

- 동 사업의 주요 증감 사유는, 차액보육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 증액(18억 8,238만 원)과, 서울형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인한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 감액(65억 2,071만 원) 및 이용 개소 수 감소로 인한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감액(3억 4,135만 원)에 따른 것임.
- 상기 사업은, 예산규모가 타 예산사업에 비하여 매우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위 통계목은 오로지 4개(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로만 구성되어 있고, 통계목에 부수되는 세부사업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예·결산서에는 통계목까지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
- 때문에 음영부분에 해당하는 ‘대체교사 인건비’ 등 총 9개의 세세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예산 및 결산서에서도 볼 수 없는바, 이의 정보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특히,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1,408억 원)’에 부수되는 하위 세부사업들 각각은 그 예산규모도 크고, 세세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는 통계목으로만 구분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측면이 있고, 각 하위사업별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의 예산사업으로 구별해도 되는 사유가 충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예컨대, 앞서 설명과 같이 ‘보육교직원인건비’ 항목 또는 ‘시설운영비 항목’의 세세 내용이 증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예·결산서 상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예산 세부 사업 명세>

(단위: 천원)

구분	2018예산 (A)	2019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사유
계	155,017,146	151,378,069	△3,639,077	
사무관리비	31,100	31,100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4,500	4,500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위원회 운영	6,600	6,600	-	
보육사업실명자료인쇄	20,000	20,000	-	
공공운영비	23,000	0	△23,000	시스템 문자발송비 감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0	13,00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4,950,046	151,333,969	△3,616,077	
보육교사인건비	39,578,258	39,137,010	△441,248	
대체교사 인건비	1,211,210	1,470,252	259,042	대체교사 증가
처우개선비	37,433,280	36,747,182	△686,098	교직원수 감소
종교시설 인건비	145,648	106,524	△39124	시설수 감소
시간연장 근무수 당 등	708,120	710,880	2,760	
365 열대야인건비	80,000	102,172	22,172	인건비 상승
시설운영비 지원	17,592,176	19,397,035	1,804,859	
영아반 운영비	12,413,400	12,413,400	-	
보육교사 중식비	4,896,000	4,896,000	-	
보수교육 중식비	176,000	101,250	△75,750	대상 교직원수 감소
365 열대야인건비	106,776	1,986,385	1,879,609	거점형 개소수 증가 (10개소→50개소)
보육료차액지원 (저소득)	833,820	1,243,152	409,332	차액보육료 단가 상승 (83,000원→105,000원) (68,000원→ 89,000원)
보육료차액지원 (일반)	23,725,152	25,198,177	1,473,025	차액보육료 단가 상승 (32,000원→47,000원) (26,000원→40,000원)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지원	466,000	466,000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65,181,060	58,660,353	△6,520,707	서울형 개소수 감소 (1,130개소→947개소)
재능기부어린이집 운영	180,000	180,000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5,886,180	5,544,832	△341,348	
다문화통합 보육시설 지정 운영	95,400	95,400	-	
조리원 처우개선	1,412,000	1,412,000	-	

- 따라서, 예산서상에 세부항목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포괄예산처럼 사용되어지는 문제의 개연성을 없애고,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과목을 간명하고 단순하게 분리함으로써, 시민으로 하여금 예산정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투명한 예산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음.
- 한편 `13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전소득 계층에게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었으나,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여전히 ‘차액보육료’라는 부모부담금을 별도로 지하고 있어, 정부지원시설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는 결국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기피현상과 경영악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차액보육료’의 문제는 무상보육 정책과 배치된다고 할 것임.
- 서울시에서는 `18년 현재 차액보육료의 55%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자치구청장의 의지나 자치구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원하고 있으며 총 13개의 자치구에서 나머지 45%를 구비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19년 예산안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된 “보육료 차액지원(일반)”은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¹⁾를 시:구비 매칭을 통해 전액 지원하려는 것으로,

1) 차액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와 시·도 수납한도액과의 부모부담 차액

-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 공약사업으로,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에 따르면 `19년부터 전액 지원이 시행될 예정임.

<차액보육료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차액보육료 지원	55%	100%	100%	100%	100%

- 서울시는 자치구와의 분담을 통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협의를 위한 자치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매칭 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시 재정여건, 자치구 협의 등 감안하여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2018 하반기 자치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18. 10. 5.(금) 10:00~12:00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 : 총 10명
 - 내 부(6) :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부구청장(서대문·양천·관악), 정책기획관
 - 외 부(5) :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 ▶ 자치구 : 중랑 여성가족과장, 강동 건강증진과장, 강서 여성가족과장, 성동 교통지도과장
 - ▶ 서울시 : 보육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여성정책담당관, 주차계획과장, 일자리과장, 예산담당관
- 안건 : 4건
 - 민간어린이집 보육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 민간 개방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인력 지원,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재정지원

<참고 : `18년 차액보육료 지원현황>

(단위: 원)

구분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보육료	서울시 지원액	부모부담 보육료1)
만3세	325,000	220,000	105,000	58,000	47,000
만4~5세	309,000	220,000	89,000	49,000	40,000

- 그런데 성북구와 중구는 '19년 예산안에 최종 비율은 30%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자치구와의 소통이나 협의가 실제로는 매우 부실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할 것임.
- 또한 차액보육료는 '16년 최초 38.5%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 55% 수준까지 예산 증액을 이끌어낸 주체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라는 점을 돌이켜 볼 때, 차액보육료 시비분 확대를 통해 부모의 부담과 함께 자치구의 재정 부담도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에 대하여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거나 또는 적어도 보육료 수준의 중앙-지방간 매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대정부차원의 국고지원 요구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자치구별 차액보육료 지원 현황>

(2018. 9월 기준, 단위: 원)

연번	자치구명	만3세(총 105,000원)			만4~5세(총 89,000원)			비고
		구비 지원액	부모 분담금	구비 분담율	구비 지원액	부모 분담금	구비 분담율	
1	강 남 구	47,000	0	45%	40,000	0	45%	
2	양 천 구	47,000	0	45%	40,000	0	45%	
3	강 동 구	47,000	0	45%	40,000	0	45%	
4	성 동 구	47,000	0	45%	40,000	0	45%	
5	마 포 구	47,000	0	45%	40,000	0	45%	
6	구 로 구	47,000	0	45%	40,000	0	45%	
7	서 초 구	47,000	0	45%	40,000	0	45%	
8	용 산 구	47,000	0	45%	40,000	0	45%	
9	동 작 구	47,000	0	45%	40,000	0	45%	
10	영등포구	47,000	0	45%	40,000	0	45%	
11	동대문구	47,000	0	45%	40,000	0	45%	
12	송 파 구	47,000	0	45%	40,000	0	45%	
13	노 원 구	47,000	0	45%	40,000	0	45%	'18.9. 45%지원
14	강 서 구	28,000	19,000	27%	23,000	17,000	26%	
15	성 북 구	28,000	19,000	27%	22,000	18,000	25%	
16	강 북 구	25,000	22,000	24%	20,000	20,000	22%	
17	광 진 구	24,000	23,000	23%	20,000	20,000	22%	
18	도 봉 구	20,800	26,200	20%	17,000	23,000	19%	
19	서대문구	18,000	29,000	17%	15,000	25,000	17%	
20	중 구	17,000	30,000	16%	15,000	25,000	17%	
21	중 랑 구	17,000	30,000	16%	15,000	25,000	17%	
22	금 천 구	16,000	31,000	15%	13,000	27,000	15%	
23	은 평 구	12,000	35,000	11%	9,500	30,500	11%	
24	관 악 구	9,000	38,000	9%	8,000	32,000	9%	
25	종 로 구	0	47,000	0%	0	40,000	0%	

3)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계속)

- 동 사업은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대상 지역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18년 하반기에 4개 자치구(노원, 도봉, 마포, 성북구)에 설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87개소 추가 설치·운영하려는 확대안으로, '19년 예산은 전년대비 136억 2,823만 원이 증액(16,396%증가)된 137억 1,134만 원이 편성됨.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29,800) 99,400	(x24,915) 83,117	(x3,885,345) 13,711,347	(x3,860,430) 13,628,230	(x15,494) 16,396
사무관리비	(x-) 0	(x-) 0	(x-) 520,000	(x-) 520,000	(x-) 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x-) 0	(x-) 0	(x-) 6,000	(x-) 6,000	(x-) 0
전산개발비	(x-) 0	(x-) 0	(x-) 140,576	(x-) 140,576	(x-) 0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x14,800) 49,400	(x9,915) 33,117	(x1,101,345) 6,084,771	(x1,091,430) 6,051,654	(x11,007) 18,273
자치단체자본 보조	(x15,000) 50,000	(x15,000) 50,000	(x2,784,000) 6,960,000	(x2,769,000) 6,910,000	(x18,460) 13,820

- 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① 키움센터 87개소 신규 설치비(69억 6,000만 원)과 ② 91개 키움센터 인건비 (54억 7,262만 원) 및 운영비(6억 1,215만 원), ③ 돌봄포털서비스 구축(1억 4,058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예산 산출근거>

과목구분	예산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운영 2,500,000*4회 = 10,000천원
	○ 온마을아이돌봄 운영지침 제작 10,000,000*1직 = 10,000천원
	○ 공모 심사 사업비 등 10,000,000*1회 = 10,000천원
	○ 성과발표회 개최 10,000,000*1회 = 10,000천원
	○ 초등돌봄사업 홍보 480,000,000 = 480,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우리동네키움센터 추진 6,000,000*1직 = 6,000천원
전산개발비	○ 돌봄포털서비스 구축 140,576,000 = 140,576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기존 센터 인건비(상근) 1인*2,138,000원*12월*4개소 = 102,624천원
	○ 기존 센터 인건비(시간제) 2인*1,030,000원*12월*4개소 = 98,880천원
	○ 기존 센터 인건비(코디네이터) 2인*1,030,000원*12월*4개소 = 98,880천원
	○ 신규 센터 인건비(상근) 1인*2,138,000원*9.5월*87개소 = 1,767,057천원
	○ 신규 센터 인건비(시간제) 2인*1,030,000원*9.5월*87개소 = 1,702,590천원
	○ 신규 센터 인건비(코디네이터) 2인*1,030,000원*9.5월*87개소 = 1,702,590천원
	○ 기존 센터 운영비 1,400,000원*12월*4개소*50% = 33,600천원
○ 신규 센터 운영비 1,400,000원*9.5월*87개소*50% = 578,550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설치비 87개소*63,000,000 = 5,481,000천원
	○ 장비비 87개소*17,000,000 = 1,479,000천원

-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설치·운영 계획에 따르면 `19년은 50개소 추가 설치·운영할 예정이나, 보건복지부 가내시에서 서울시 물량이 87개소로 계획보다 많은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어 목표 개소 수를 초과 달성하게 되었음.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설치·운영 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4개소	50개소	150개소	250개소	400개소

- 먼저 키움센터 87개소 신규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시비 매칭 3:7로 기본 설치비 5,000만 원 및 친환경기준, 안전기준 등 적용 시 부족이 예상되어 시비로 1,300만 원, 장비비 명목으로 국비 1,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개소당 8,000만 원, 총 6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국시비 매칭 3:7로 상근 1명(월 213만 8,000천 원)과 시간제 2명(4시간 근무, 월 103만 원)외에 시비로 시간제 2명(4시간 근무, 월 103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개소당 월 인건비 625만 8,000원으로 신규 센터의 경우, 설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9.5개월분만을 편성하여, 총 54억 7,262만 원이 책정되었음.
- 키움센터 이용시민의 편의증진과 센터현황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 돌봄 포털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4,058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온종일 돌봄사업의 서울형 사업으로, 향후 전국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유사한 포털을 만들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과의 연동 문제나 이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 있어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기 및 방식을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산 시스템 개발이나 관련 예산확보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단계적으로 센터 확산 및 이용규모가 충분히 커지면 전산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예정임.
- 그 외 사무관리비로 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 4억 8,000만 원을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음.
 - 앞서 ‘서울#WithU 센터 설치, 운영’사업에서 서술한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홍보비의 최근 5년간 평균 2억 2,22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홍보비 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현재 서울시에는 약 430개 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국민기초생활 급여 수급을 하거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아동이 주 이용대상(80% 기준)이 되고 있음.
 - 이용아동 기준에 제한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중복 문제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확대에 의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20%의 일반아동이 키움센터를 이용할 경우,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수요 감소로 시설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는 바, 앞으로 두 돌봄 주체 간의 상생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4)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계속)

- 동 사업은 영유아의 발달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련 교육과 상담을 통해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액 시비 사업으로 '19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3억 4,020만 원이 편성됨.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340,200	(x-) 1,340,200	(x-) 1,340,200	(x-) 0	(x-) 0
민간위탁금	(x-) 1,340,200	(x-) 1,340,200	(x-) 1,340,200	(x-) 0	(x-) 0

- 예산 편성 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 간호사 방문수당(11억, 1,600만 원)과 관리운영비(2억 2,420만 원) 편성되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예산 산출근거>

과목구분	산출내역
민간위탁금	○ 방문수당 31천원*3,000개소*12회 = 1,116,000천원
	○ 관리운영비 224,200,000 = 224,200천원

- 동 사업의 예산과목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과목명임.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2018. 7.)」 따르면, 민간위탁금²⁾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방문간호사 지원 사업의 `19년 추진일정에는 `19. 2~3월에 용역계획 공고 및 업체 선정을 계획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은 민간위탁이라기 보다는 용역계약을 통한 연내 사업 집행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민간위탁 절차를 통해 추진하지 않을 경우 차라리 예산과목은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신규사업인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역시, 예산사업명을 민간위탁금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수행주체로 명시한 아동자립지원사업단³⁾의 경우, 이미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통

2) 민간위탁금의 정의 (행정안전부, 2018. 7.)」

민간위탁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해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동 사업을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금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거나. 현재 사업에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 용역사업비로 변경하여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내용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19년)

- 사업기간 : 2019.1월~12월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의 보호종료 아동(자립역량과 의욕, 연령 등 고려, 시설장 추천 등을 통한 선발)
- 사업수행주체 : 아동자립지원단
- 추진방법 : 보호종료 아동 선발 후 아동자립지원단을 통한 사례관리 등 지원
- 사업의 주요내용 : 주거 지원(임대주택, 도배 등 주거여건 지원) 및 사례관리 지원

- 한편 동 사업을 통한 실제 방문지원 서비스는 9개월 동안 (2019.04~2019.12)만 시행되는데 이는 연례적으로 사업기간을 1년으로 하지 않고 매해 3개월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백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3)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퇴소예정 아동과 퇴소아동, 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상담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후원자 개발 및 연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시설 내 청소년들의 자립준비계획을 비롯해 퇴소 청소년들의 초기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340,200	
지원계획 수립	2019.01~2019.01		지원계획 수립 및 부가가치세 예산보전
계약체결	2019.02~2019.03		용역계획 공고 및 업체 선정
어린이집 방문지원	2019.04~2019.12	1,340,200	방문간호사 매2월 3회 어린이집 방문
정산 및 결과보고	2019.12~2019.12		사업실적 보고

- 이와 관련하여 `17년도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이 제안된 바 있음.

방문간호사 서비스 건의사항

- ▶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능한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요구되나, 현행은 연단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방문간호사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 잘 훈련된 유능한 간호사의 이탈을 막을 수 없으므로, 정규사업으로의 전환 등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 ▶ 또한 방문보수는 2012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만족도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상황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평균임금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결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잘 훈련된 간호사 인력을 보유하기 위한 방문보수의 현실화가 필요
- ▶ 본 사업에 대한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연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공백으로 인해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서비스질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5)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계속)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사업은 국비 보조 운영비 지원사업과 별개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순수 시비 사업임.
- `19년 예산은 전년대비 20억 7,435만 원을 증액하여 총 77억 7,766만 원을 편성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5,703,309	(x-) 5,703,309	(x-) 7,777,660	(x-) 2,074,351	(x-) 3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0	(x-) 0	(x-) 4,000	(x-) 4,000	(x-) 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x-) 5,003,309	(x-) 5,003,309	(x-) 5,082,020	(x-) 78,711	(x-) 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0	(x-) 0	(x-) 491,640	(x-) 491,640	(x-) 0
자치단체자본보조	(x-) 700,000	(x-) 700,000	(x-) 2,200,000	(x-) 1,500,000	(x-) 214

- 서울시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18년 10월 현재 총 435개가 운영 중이며, 동 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는 총 1,056명, 이용 아동 수는 11,595명임.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기준: 2018년 10월 현재)

합계	총 개소수			종사자 수	이용 아동수 (정원)	특성별 운영	
	운영비 지원 형태					특수 목적형	토요 운영
	국·시비 지원 (2년 이상)	시비 지원 (1년 이상~2년 미만)	국·시비 미지원 (1년 미만 신고시설)				
<u>435</u>	416	8	11	1,056	11,595 (12,821)	61	149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된 운영시설에 한하며, `18년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총 424개소 임.
-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06년 97개소였던 것이, 10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하여 `18년에는 435개로 증가하였고, 동 기간동안의 지원 예산도 `06년 23억 원에서 `18년 404억 원으로 18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해 왔음.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 원 (개소)	97	214	296	349	408	416	422	427	424
예 산 (백만원)	2,328	5,544	12,073	22,088	31,387	32,937	33,407	35,725	40,359

- 현재 서울시 관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체 별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운영자의 비율이 6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아동센터 운영체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국공립		민간					
	총계	공립·구립	소계	법인				개인
		직영 위탁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개소 수	435	27	408	28	28	32	24	296
종사자 수	1,056	81	975	67	68	73	63	704

-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타 시설들에 비해 공공성 강조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해 왔음.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일정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대부분이 민간/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상은 보육분야 전달체계상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을 점유해왔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⁴⁾, 민간 공급체계의 과다로 인한 문제는 이미 보육분야 경험을 통해서도 그 시사점을 얻어 볼 만함.
- 특히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등장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미래 비전에 대한 위기와 기회가 한꺼번에 다가온 상황에서, 지금까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관심이 적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공

4) 서울시의 경우 2012년 당시 국공립어린이집 점유율은 5%였으나, 2018년 9월현재 24.2%까지 상향됨. 이는 서울시 차원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음. 2017년 전국 평균은 7.8%임.

성 강화 방안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때임. 특히 서비스 질 향상을 실질적 프로그램비 필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전문성 강화, 평가철저 및 평가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둘러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검토가 요구됨.

- 지역아동센터 관련 연구결과⁵⁾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타 유사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기준을 결정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임금테이블이 부재한 것에서 연유된다고 볼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종사자의 직업안정성 제고를 통한 사기진작 및 잦은 이직률 보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안정적·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난 `12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시비 사업으로 지원해 왔으며, 2018년 현재 1인당 월 30만 원 썩을 지원하고 있음.

5) 송이은(2017),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내역>

(단위: 천원,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처우개선비 (1명/1개월)	130	160	190	220	220	250	300
1인당 총액	1,560	1,920	2,280	2,640	2,640	3,000	3,600
예산편성 지원인원(명)	800	840	902	940	981	1,000	1,030
소요예산 (천원)	1,248,000	1,613,000	2,058,000	2,481,600	2,589,840	3,000,000	3,707,000

-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수준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시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바 (생활복지사 기준), 이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가 요구됨.

- 또한, 현재 인건비의 책정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설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함으로써 자치구 및 시설 재정여건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일 노동을 하는 시설 종사자간에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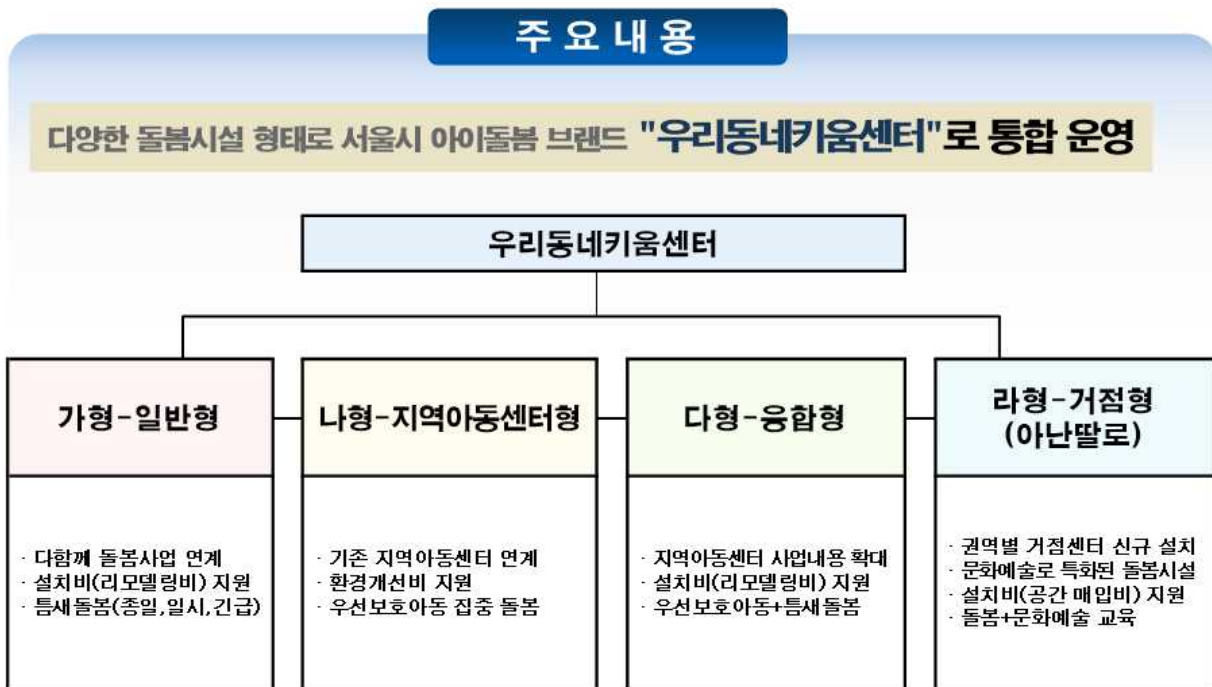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본적으로는 중앙차원의 임금 테이블 마련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이와 함께 서울시 차원의 보조적 지원을 늘려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한편 금번 `19년 예산에는 지역아동센터 융합형센터(키움센터형 융합형 지역아동센터)를 17개 신규 설치하고 월 140만원의 운영비(시:구비

5:5 매칭)와 4명(4시간 시간제, 103만 원/인당)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 6개월분이 편성되었음.

- 또한 융합형 지역아동센터 15개에 대한 리모델링비(8,000만 원/개소당) 총 1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을 확대하여 지역아동센터에 틈새돌봄 기능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안)에 따라 지역아동센터가 초등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동 예산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짐.



*출처: 서울시의회(2018.10), 서울시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안)]

6)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계속)

- 동 사업은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생활서비스 및 비즈니스 지원 등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외국인지원시설 18개소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순수 시비 사업임.
- '19년 예산은 전년대비 20억 7,435만 원을 증액하여 총 77억 7,766만 원을 편성함.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업 예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8,205,563	(x-) 8,205,563	(x-) 8,218,355	(x-) 12,792	(x-) 0
사무관리비	(x-) 14,716	(x-) 14,716	(x-) 14,716	(x-) 0	(x-) 0
공공운영비	(x-) 5,812	(x-) 5,812	(x-) 8,791	(x-) 2,979	(x-) 5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x-) 6,000	(x-) 6,000	(x-) 6,000	(x-) 0	(x-) 0
연구용역비	(x-) 0	(x-) 0	(x-) 50,000	(x-) 50,000	(x-) 0
민간위탁금	(x-) 6,047,064	(x-) 6,047,064	(x-) 6,152,435	(x-) 105,371	(x-) 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1,971,251	(x-) 1,971,251	(x-) 1,986,413	(x-) 15,162	(x-) 0
민간위탁사업비	(x-) 60,720	(x-) 60,720	(x-) 0	(x-) △60,720	(x-) △100
자치단체 자본보조	(x-) 100,000	(x-) 100,000	(x-) 0	(x-) △100,000	(x-) △100

- 동 사업의 민간위탁사업 지원대상 시설은 총 10개로, 예산액은 61억 5,244만 원에 해당함.

<지원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서울글로벌센터	서남권 글로벌센터	동대문 글로벌센터	서울글로벌 문화체험센터	외국인 근로자센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One-Stop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서울시내 외국인센터(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구심체 역할 수행 ○ 외국인의 창업투자에 대한 종합적, 맞춤형 지원으로 비즈니스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지원 사업 : 서남권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상담, 한국어 강좌 및 기타강좌, 의료지원 서비스 등 종합서비스 제공 ○ 교육지원 사업 : 한국어 강좌, 외국어 강좌, 요리 및 문화 등 기타 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및 중앙아시아인 교류지역인 광화동 일대에 전문적 무역·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 비즈니스 한국어과정, 비즈니스 전문상담 운영, 비즈니스 세미나 개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관광안내,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명동 일대 내 외국인 문화교류 허브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불편·부당사항 해소로 권익보호 ○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서울생활 정착 도모 ○ 6개 (성동, 성북, 금천, 양천, 은평, 강동)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밀집 거주지역에 한국어강좌, 문화탐방, 국가별 커뮤니티 행사지원 ○ 7개(연남, 역삼, 서래, 이태원, 이촌, 성북, 금천) 센터
개소수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6개소	7개소
예산 과목	민간위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금 ○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수탁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 비즈니스 지원 : 서울산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 이주민센터 친구 ○ 교육지원: 영등포구 교육지원팀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관광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 (사)노동인권회관 ○ 성북: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 금천: 사회복지법인 티뷰크복지재단 ○ 양천: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 은평: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 강동: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 	6개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성북구, 금천구)
'19년 예산액	2,968,744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 1,589,366천원 ○ 비즈니스 지원 1,379,378천원 	796,537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550,75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245,787천원 	416,508천원	589,604천원	1,626,829천원	1,740,626천원

-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의 경우, 최초 수탁체인 (주)서울관광마케팅이 '18.5월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관광재단으로 변경되었는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사업들과 달리 연말에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따로 책정하여 지급('18년 5% → '19년 2%)⁶⁾받고 있음.

제11조(위탁수수료 및 성과목표 시행평가) ① “시”는 이 사업의 수행대가로 “회사”에게 당해연도 총 사업비 범위 안에서, 실적 집행금액의 5%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다만, “시”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수수료를 4~6%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시 단위사업별 성과목표를 동시에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단위사업별 성과목표 대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 또한 비영리단체인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부가세 명목으로 민간위탁금의 10%(`19년 5,360만 원)를 편성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사업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수탁체가 지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지는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인지 대행사무인지에로 구분될 수 있는데,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체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됨.

- 그런데 현재 민간위탁 사무와 대행사무가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민간위탁사무인 경우 통상 수탁체가 온전히 모든 책임을 지고 사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위탁체가 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서울시로부터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받거나 반납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대행사업으로 봐야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위탁 사

6)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사업부서용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서울시, 2017.7.1.)에 따르면 ‘출연기관 또는 위탁사무가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의 수익사업인 경우, 수수료 반영 전 총 지출액의 2%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18년의 경우 수수료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5%로 편성한바 있음.

무가 많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따져봐야할 것임.

- 한편, 민간위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수탁체는 정산시 용역계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급 내역에 대한 매입공제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므로, 매입공제액 반납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여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2019년 예산(안)>

구분	항목	금액
인건비	기본급(6명)	189,000
	퇴직충당금	16,815
	단시간근로자	33,800
	제수당	6,500
	소계	246,115
운영비	사무관리비	47,879
	공공요금	151,000
	교육훈련비	600
	사회보험부담금	18,900
	소계	218,379
사업비	문화사업비	50,000
	홍보비	11,000
	소계	61,000
계		525,494
수수료(2%)		10,510
부가세(10%)		53,600
총액		589,604

- 외국인지원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시비 100%임에도 그동안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미흡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한 점검이 필요하며, 알기 쉬운 예산구조 구축 및 원활한 예·결산 심의 등을 위하여, 현행의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예산 사업의 복잡한 예산 구조 개선이 필요함.

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계속)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좋은 성장 환경을 조성·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소관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임.
- `19년 예산안은 `18년 대비 4억 5,186만 원이 증액(0.02% 증가)된 770억 9,417만 원이 편성됨.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76,642,311	(x-) 76,642,311	(x-) 77,094,171	(x-) 451,860	(x-) 0
사무관리비	(x-) 39,400	(x-) 39,400	(x-) 81,625	(x-) 42,225	(x-) 1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4,800	(x-) 4,800	(x-) 4,300	(x-) △500	(x-) △10
민간위탁금	(x-) 15,225,660	(x-) 15,225,660	(x-) 15,451,690	(x-) 226,030	(x-) 1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x-) 61,339,451	(x-) 61,339,451	(x-) 61,556,556	(x-) 217,105	(x-) 0
민간위탁사업비	(x-) 33,000	(x-) 33,000	(x-) 0	(x-) △33,000	(x-) △100

- 주요 증액 사유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충원 필요 인력 일부 반영분(88명, 59억 원)과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신규, 13.5억 원)과 미세먼지 대책으로 도입된 공기청정기 지원비(신규,

9,700만 원) 등이 증액된 것임.

- `18년 10월 말 현재 동 사업의 지원 대상 시설은 총 63개소로 이들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1,434명이며, 시설 내 생활아동은 총 3,700(공동생활가정 320명 제외)명 임.

<지원대상 시설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보호필요아동 생활시설					보호필요 및 일반 아동 이용 시설				아동자립지원단
		소계	양육	자립지원	보호치료	종합	소계	지역아동복지센터	정보화교육센터	자광아동가정상담원	
시설수	63	42	34	3	3	2	21	18	2	1	1
종사자수	1,434	1,343	1,193	12	68	70	91	77	6	5	3

* 종합시설 1개소는 아동복지센터(서울시 사업소)로 예산을 자체편성하므로 별도로 예산편성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12년 8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15년 8월 4일부터는 강화된 기준으로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함.

- 이에 `18년 7월 말 기준 법적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인력은

7) 종사자(보육사) 배치기준 변경

- (관련법령)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 및 부칙 제4조 : 「별표 11」

* 적용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1,045명이지만, 현원은 752명으로 법정기준 대비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금번 `19년 예산의 경우에도 법정기준 인력에 따른 인건비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법정기준을 맞추려면 추가로 293명을 필요로 하지만 99명(보육사-3세아동)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함. 이에 법정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194명이 더 충원되어야 하는 상황으

구 분	현 행	개 정
30인 이상	- 0~2세 : 아동 3인당 1인 - 3~6세 : 아동 7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10인당 1인	- 0~2세 : 아동 2인당 1인 - 3~6세 :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7인당 1인
10인이상~30인 미만	2인 (아동 20인 초과시 1인 추가)	- 0~2세 : 아동 2인당 1인 - 3~6세 :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7인당 1인
10인 미만	1인	- 0~2세 : 아동 2인당 1인 - 3~6세 :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7인당 1인
공동생활가정	1인	- 0~2세 : 아동 2인당 1인 - 3~6세 :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7인당 1인

*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제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2015년 8월 6일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종사자(보육사 제외) 배치기준 변경

○ (관련법령)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 및 부칙 제4조 : 「별표 11」

직 종	현 행	개 정
영양사, 임상심리상담원	-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생활복지사	-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50명 초과시 1명 추가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초과시 1명 추가
사무원	-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10명이상 30명미만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조리원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10명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초과시 1명 추가
자립지원 전담요원	- 아동 10명이상 30명미만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10명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100명 초과시 1명 추가

로, 법정기준에 맞는 종사자 배치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번에 증액 편성된 예산뿐만 아니라 추가로 약 99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임.

<법정기준 준수 종사자 추가 확보 필요 예산액>

(단위 : 명, 백만원, '18. 7월말 현재 기준)

구 분	서울시기준		법정기준		부족인력	추가연간 소요예산
	아동수	종사자수	배치기준	아동수		
총 인원	1,962	752		1,045	293	14,971
(보육사 총계)		646		870	224	11,365
보육사(0~2세)	364	360	아동 2인당 1인	360	-	-
보육사(3~6세)	497	100	아동 5인당 1인	199	99	5,023
보육사(7세 이상)	1,090	186	아동 7인당 1인	311	125	6,342
보육사 외 직종		106		175	69	3,576

* 소요예산 : '18년 인건비 10호봉 기준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의 강화는 기존 대형 시설들을 소규모 속 소화 하고 가정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의미가 크다 할 것인 바,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 보호를 종사자의 적절한 배치인력을 통하여 요보호 아동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려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배치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써 전액 시비를 통해 충당해야하는 상황으로,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을 등을 이유로 매년 연평균 53명('15년 38명, '16년 42명, '17년 62명, '18년 70명 충원)의 추가 인력을 증원해 왔으나, 개정된 「아동복지법」 기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임.

- 서울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결과⁸⁾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실시(총 34개소 시설)한 785명 중 60.3%에 해당하는 473명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됨.
 - 이는 서울시 소관 아동생활시설 입소한 전체아동(총 2,148명)의 22%에 해당하는 것임. 다시말해, 아동생활시설 아동 5명 중 1명 이상이 정신건강상 개입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임.
- 특히, 이들 시설 가운데 34개소 가운데 11개소는 건강검진 대상 아동의 전원(100%)가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판정이 나온 상황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것임.
-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부칙 제4조⁹⁾에 따르면,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임상심리상담원 1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현재 모두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행법령상 30명이상이면 1명 배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설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 필요 비율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볼 때, ‘30명 이상 1명 배치’라는 최소 기준을 강하여 예를 들어 “정원 30명 당 1명”과 같이 시설 정원 규모에 따라 배치 인력을 추가하는 방안으로의 제도개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8) 서울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9) 상기 주석 7번 참조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아동 정신건강 검진결과(2018.9.30)>

연번	시설명	현원	아동 정신건강 검진(심리검사)								
			인원	결 과				임상심리 상담사		간호사	
				정상	개입 필요	정신검진 대상 대비 개입 필요비율	현원대비 개입 필요비율	법정 기준	현원	법정 기준	현원
계		2,148	785	312	473	60.3%	22.0%	34	34	34	34
1	000	50	5	0	5	100.0%	10.0%	1	1	1	1
2	000	67	46	38	8	17.4%	11.9%	1	1	1	1
3	000	60	46	32	14	30.4%	23.3%	1	1	1	1
4	000	51	37	4	33	89.2%	64.7%	1	1	1	1
5	000	84	22	0	22	100.0%	26.2%	1	1	1	1
6	000	63	11	1	10	90.9%	15.9%	1	1	1	1
7	000	46	7	4	3	42.9%	6.5%	1	1	1	1
8	000	54	54	53	1	1.9%	1.9%	1	1	1	1
9	000	67	20	0	20	100.0%	29.9%	1	1	1	1
10	000	70	7	1	6	85.7%	8.6%	1	1	1	1
11	000	59	49	33	16	32.7%	27.1%	1	1	1	1
12	000	62	5	0	5	100.0%	8.1%	1	1	1	1
13	000	50	25	5	20	80.0%	40.0%	1	1	1	1
14	000	51	25	8	17	68.0%	33.3%	1	1	1	1
15	000	59	21	11	10	47.6%	16.9%	1	1	1	1
16	000	55	5	0	5	100.0%	9.1%	1	1	1	1
17	000	70	8	0	8	100.0%	11.4%	1	1	1	1
18	000	30	23	0	23	100.0%	76.7%	1	1	1	1
19	000	79	55	19	36	65.5%	45.6%	1	1	1	1
20	000	67	35	5	30	85.7%	44.8%	1	1	1	1
21	000	41	10	2	8	80.0%	19.5%	1	1	1	1
22	000	53	40	16	24	60.0%	45.3%	1	1	1	1
23	000	69	39	4	35	89.7%	50.7%	1	1	1	1
24	000	31	10	0	10	100.0%	32.3%	1	1	1	1
25	000	58	5	0	5	100.0%	8.6%	1	1	1	1
26	000	57	57	46	11	19.3%	19.3%	1	1	1	1
27	000	62	4	0	4	100.0%	6.5%	1	1	1	1
28	000	55	22	3	19	86.4%	34.5%	1	1	1	1
29	000	50	37	19	18	48.6%	36.0%	1	1	1	1
30	000	52	15	3	12	80.0%	23.1%	1	1	1	1
31	000	51	4	3	1	25.0%	2.0%	1	1	1	1
32	000	167	16	0	16	100.0%	9.6%	1	1	1	1
33	000	169	20	2	18	90.0%	10.7%	1	1	1	1
34	000	39	바다상설					1	1	1	1

* 출처: 2018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구성

8)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사업 (계속)

-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사업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평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한 것임.
- 2019년 예산은 전년대비 1억 2,010만 원이 감액(18% 증가)하여 5억 4,095만 원을 편성함.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175,400) 661,039	(x175,400) 661,039	(x131,037) 540,946	(xΔ44,363) Δ120,093	(xΔ25) Δ18
사무관리비	(x-) 397,939	(x-) 397,939	(x-) 344,390	(x-) Δ53,549	(x-) Δ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175,400) 263,100	(x175,400) 263,100	(x131,037) 196,556	(xΔ44,363) Δ66,544	(xΔ25) Δ25

- 2006년 2,424억 원이던 서울시 보육재정은 금번 2018년에는 1조 8,314억 원이 편성되어 지난 10여년을 지나면서 7.6배 이상 증가함.
-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보육재정 투자에 비해 보육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 운영' 즉, 품질관리를 위한 서울시 예산은 불과 5억 4,095만 원(2019년 편성한 기준)으로, 이는 서울시 보육예산의 0.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바, 보육서비스의 내실화 및 품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개발 및 예산의 확대가 요구됨.

-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회계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어린이집은 전체의 85.7%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미사용 시설은 14.3%에 해당함(18.10.30 기준).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현황>

전체 시설	사용 시설	미사용 시설
6,022개소(100%)	5,166개소(85.7%)	856개소(14.3%)

-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의 별도의 회계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은 시 자체에서 개발한 것으로, 어린이집의 세입 및 예산, 집행·결산 등 일련의 재무회계 처리 기능과 물품·관리, 급여대장, 교사 및 아동출석부 출력 등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지원기능 등을 탑재하여 어린이집의 사무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급간식 기준, 기타 운영비 기준 초과시 경고 기능 등 기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임.
- 무상보육 시대를 맞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시 예산 규모가 점차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회계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현재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을 미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현행의 가입 권고 수준의 행정조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수단을 통해 가입을 의무화하고,
- 이를 통해 시설의 재무·회계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명실공히 사회복지 공공시설로서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운용 개요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이 운영 중임.
- 2019년도 성평등기금 조성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 2018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240억 2,152만 원이고,
 -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억 3,761만 원,
 - 지출은 9억 5,000만 원이며,
 - 2019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240억 913만 원임.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18년도말 조성액(a)	'19년도 조성계획			'19년도말 조성액 e = a + d
	수입(b)	지출(c)	증감 d = b - c	
24,021,520	937,611	950,000	△12,389	24,009,131

-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 수입의 주요 원천은 일반회계 전입금(52%), 이자수입(29%), 예치금 회수(169%)로 구성되고,
 - 수입 총액은 11억 5,913만 원으로 전년대비 4,485만 원이 증액

(4.0%)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는 예치금회수(4,407만 원)가 늘어났기 때문임.

<2019년도 성평등기금 수입 계획>

(단위: 천원)

항 목	'18년 수입액	'19년 수입액			'19년 수입액 대비율
		수입액	증 감	증감율	
합계	1,114,279	1,159,131	44,852	4.0%	100%
예치금회수 (이월금)	177,446	221,520	44,074	24.8%	19%
이자수입	336,833	337,611	778	0.2%	29%
기타회계 전입금	600,000	600,000	-	-	52%

- 지출은 주로 '고유목적사업비(80%)'와 예치금(18%)에 지출할 계획임.

<2019년도 성평등기금 지출 계획>

(단위: 천원)

항 목	'18년 지출액	'19년 지출액			'19년 지출액 대비율
		지출액	증감	증감율	
합계	1,114,279	1,159,131	44,852	4%	100%
고유목적사업비 (공모사업추진)	930,000	930,000	-	-	80%
기본경비	20,000	20,000	-	-	2%
예치금	164,279	209,131	44,852	-	18%

- 2019년 공모사업 추진 사업의 구체적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 사업비(공모사업추진)로 편성된 9억 3,000만 원 가운데 9억 원은 공모사업추진(40개 내외 단체 * 20,000천원 내외 지원)을 위해 편성되었고, 3,000만원은 공모사업 평가운영비 등의 용도로 편성됨.

〈‘공모사업 추진’ 사업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예산액	2018예산액 (A)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1,030,000	(x-) 930,000	(x-) 930,000	(x-) Δ100,000	(x-) Δ9.7
사무관리비	(x-) 30,000	(x-) 30,000	(x-) 30,000	(x-)	(x-)
민간경상 사업보조	(x-) 1,030,000	(x-) 900,000	(x-) 900,000	(x-) Δ100,000	(x-) Δ9.7

나. 성평등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

1) 기금운용의 적합성 문제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써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 짐.
- 하지만,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담보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음. ‘18년 동 기금은 상기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게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18년 한 해 동안 총 38개 단체에 총 7억 4,885만 원을 지원(1개소당 최저 지원액 770만 원, 최고지원액 2,900만 원, 평균 1,971만 원 지원)하였음.

<연도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운영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예산총액	지원액	공모 단체 수	지원 (선정) 단체 수	최저 지원액	최고 지원액	1단체당 평균 지원금액
2012	2,070,000	1,880,987	260	109	3,712	60,000	17,257
2013	900,000	814,469	167	69	4,515	22,000	11,804
2014	1,421,580	996,771	144	74	4,488	25,000	13,470
2015	616,429	585,646	152	44	4,000	30,000	13,310
2016	861,449	695,400	104	44	4,400	35,000	15,804
2017	900,000	840,537	91	54	1,800	30,000	15,566
2018	900,000	748,851	72	38	7,000	29,000	19,707

* 예산총액 : 성평등기금 총 예산 중 「공모사업 추진(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함

* 지원액 : 실제 공모사업 선정단체 대상 집행액

- 그런데, 동 기금에서 추구하는 설립목적은 일반회계 운용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동 기금 운용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기금운용재원 안정성 확보 필요

-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확충 재원이 안정적이어야 함.

- 그러나 위의 기금안 수입계획에서 제시하였듯이,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이 전체 운용기금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동 기금에서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일반회계를 통해 수행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처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받아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기금재원조달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됨.
- 더욱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되는 재원은 그동안 2014년 5억 원, 2016년 3억 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억 원으로 꾸준하게 전입되어 온 바, 동 기금재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연도별 기금 수입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전입금(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2014년	1,506,684	500,000	371,450	635,234
2015년	843,909	0	328,387	515,522
2016년	1,049,449	300,000	194,534	554,915
2017년	1,182,540	600,000	173,668	408,872
2018년	1,114,279	600,000	177,446	336,833
2019년	1,159,131	600,000	221,520	337,611

- 이 상에서 제시한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종합해 볼 때, 금번 2019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역은 주로 보육 사업 및 아동수당 지급 등을 위한 법정 의무 경비 및 법정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시비 사업을 포함하여 각 사업별로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금번 예산안을 통해 신규 편성된 시비사업(예시. 성평등 소셜디자인너 양성, 서울#WithU센터 설치 운영,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지원,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운영 등)의 경우,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대다수로 이에 대한 사전 사업계획 여부와 정책효과성 및 예산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음.
- 또한 여성가족실 사업의 상당수가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지원 등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반영한 시비 반영 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나, 시비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문제와 국고보조금의 미확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여성가족실 소관 시설의 처우개선 문제, 여성일자리기관 운영의 재구조화, 민간이전 경비 등 보조금 관리의 효율

성 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내실 운영 필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강화 등에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음.

-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서는 성평등기금의 기금으로써의 적합성 문제와 운용재원 안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임.